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383
----------	-------

발의연월일 : 2025. 7. 9.

발 의 자 : 윤종오 · 전종덕 · 정혜경
이재강 · 박은정 · 박수현
손 술 · 김재원 · 김영호
김동아 · 허성무 · 한창민
정춘생 의원(13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렌탈 시장은 정수기, 가전기기, IT기기 등 다수의 서민층이 초기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리 잡아, 국내 렌탈 시장 규모는 2020년 40조 원을 넘어섰고, 2030년에는 2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현행법은 채무조정의 대상을 금융채권으로 한정하고 있어, 렌탈약정 채무자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소송이나 추심업체를 통한 강제 추심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소멸시효가 지난 렌탈약정채권을 저가에 매수한 추심업체가 지급명령 또는 불법적 수단을 통해 이를 강제 추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신용조회 및 개인정보 유출 등 렌탈 약정채권 추심과 관련된 문제들 또한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어 렌탈 약정채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채무조정 제도 적용의 필요성이 제기

됨.

이에 정수기나 가전기기 등의 렌탈회사도 전기판매사업자나 전기통신사업자와 같이 신용회복지원협약의 체결 대상으로 하여 채무자를 신속하게 지원·구제함과 동시에 불법추심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75조 제2항제3호의6 신설).

법률 제 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0823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2항에 제3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6. 「상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동산의 임대차를 영업으로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법률 제20823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5조(신용회복지원협약) ① (생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 3의5. (생략) <u><신설></u> 4. (생략) ③ ~ ⑤ (생략)	법률 제20823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5조(신용회복지원협약)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의5. (현행과 같음) 3의6. 「상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동산의 임대차를 영업으로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